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-101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」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관·기금출납원에 관한 내용을 현재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제명을 정비함
- 나.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(안 제2조의2)
- 다. 기금운용관·기금출납원 관련 법령을 현재 법령에 맞게 수정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
 - 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 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5. 7. 10.~7. 30.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- 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의2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「지방재정법」”을 “「지방회계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2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 <u>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</u> <u>및 운용 조례</u>	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 <u>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 설치</u> <u>및 운용 조례</u>
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 의 존속기한은 <u>2025년 12월 31</u> <u>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</u> <u>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</u> <u>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</u> <u>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</u> <u>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u>	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 ----- <u>2030년 12월 31일</u> ----- . <u><단서 삭제></u>
제12조(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) ① · ② (생 략) ③ 「 <u>지방재정법</u> 」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 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 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.	제12조(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「 <u>지방회계법</u> 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 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 3억 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기금운용관·기금출납원에 관한 근거 법령
개정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 사항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윤현
연 락 처	02-3153-9243